

비관세장벽 모니터링(태국/방콕지사 작성)

I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변경사항

- 없음

2. 시사점

- 없음

II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1. 통관동향 등 이슈

- 없음

2. 변동사항

- 없음

3. 기타 주의사항 등

- 2023년부터 태국 소비세국(Excise Department)에서 전자담배를 소비세 부과 대상에 추가할 예정이다. 태국에서 전자담배의 판매 및 소지는 불법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번 소비세 부과가 자칫 전자담배를 합법화 하는 것을 비취질 수 있다. 하지만 전자담배에 소비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전자담배가 합법적이라는 뜻은 아니다. 전자담배 판매 합법화 여부는 태국 보건부와 상무부의 방침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으로 태국 소비세국에서 소비세를 부과함으로써 전자담배를 밀반입하는 것을 억제하고자 함이다. 또한 태국 소비세국의 전자담배에 대한 소비세 부과는 전자담배 판매 단속 시 소비세국이 현실적으로 마땅히 제제할 수단이 없어 제도의 편입권으로 넣고자 시행하는 정책이므로

전자담배에 대한 판매 및 소지 합법화와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출처 : <https://www.prachachat.net/finance/news-1155271>)

- 태국으로 수입되는 신선농산물 잔류농약 감시 강화조치에 대한 공지
관련 고위험군품목(Very High Risk) 최신 리스트
업데이트('22.12.22)

* (별첨) 국가별 고위험품목 리스트

- 전월대비 변동사항 없음
- 고위험군품목 관리대상에서 삭제되기 위해서는 수입통관 시 해당 문제 성분 COA 제출 또는 샘플검사와는 별도로 사전 FDA에 관리대상 리스트 삭제를 위한 샘플검사를 정식으로 요청해야 하며, 태국 정부 지정 실험실 또는 ISO/IEC 17025 인증 검사기관을 통한 3회 연속 샘플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시 관리대상에서 삭제됨(검사비용 수출업체 또는 수입업체 부담)

* 삭제요청은 유해물질이 발견되었던 품목을 수입했던 수입업체 요청으로 삭제 가능

III

통관문제사례 관련(대응방안, 사유분석, 경쟁국산 등)

1. 통관거부사례(기준일)

- 없음

2. 시사점

- 없음

IV

FTA 이행이슈 관련

1. 관련이슈

- 없음

2. 시사점

- 없음